

「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경기도 내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 15개사(명)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화 지원금 최대 30백만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교육, IR멘토링, IR데모데이 및 투자간담회 등)
-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심층컨설팅)

2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구분	내용
예비 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3.3.24.) 전('23.3.23.)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기간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경기도내에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초기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일 : '20.3.24. ~ '23.3.23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법인)의 재창업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 (최종 선정자에 한함)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체결 완료된 “채무조정합의서”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협약)대상에서 제외됨

※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 - 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 「붙임1」참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 「붙임1」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휴업중인 자
4.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6.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7.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8.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3 세부 지원내용

①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평가 등급별 24백만원 ~ 30백만원 차등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붙임3. 사업화 지원금 집행 비목」 참조

- 총사업비 구성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이상

총사업비	경기도 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 참여기업이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②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 (예비)재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멘토링, 투자IR, 투자자 간담회, 네트워킹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교육멘토링	· 재창업자 맞춤 교육 및 IR멘토링 등
IR데모데이	· 투자자 초청 IR데모데이 및 투자자 1:1 멘토링(간담회)
네트워킹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 선배기업, 동사업 참여자들 간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

③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 지원내용 : 일반상담,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심층 컨설팅 지원
- 상담분야 : 경영, 자금/금융, 회생/법률, 인사/노무, 특허/인증, 세무/회계 등
- * 성공센터 위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 창업베이스캠프 內

④ 창업지원 시설 이용

- 시설개요

시설명		창업베이스캠프	
시설 현황	위치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규모	576m²(174평), 30석	
	기타시설	상담실, 소그룹 회의실	
인프라 지원		 비지정 좌석, 공용 복합기, 휴게공간 등	

- 지원내용
 - 사무공간·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지원, 창업상담 지원
 - 협약기간 내 사업장 주소 등록 가능, 협약종료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사업 신청

□ 신청 · 접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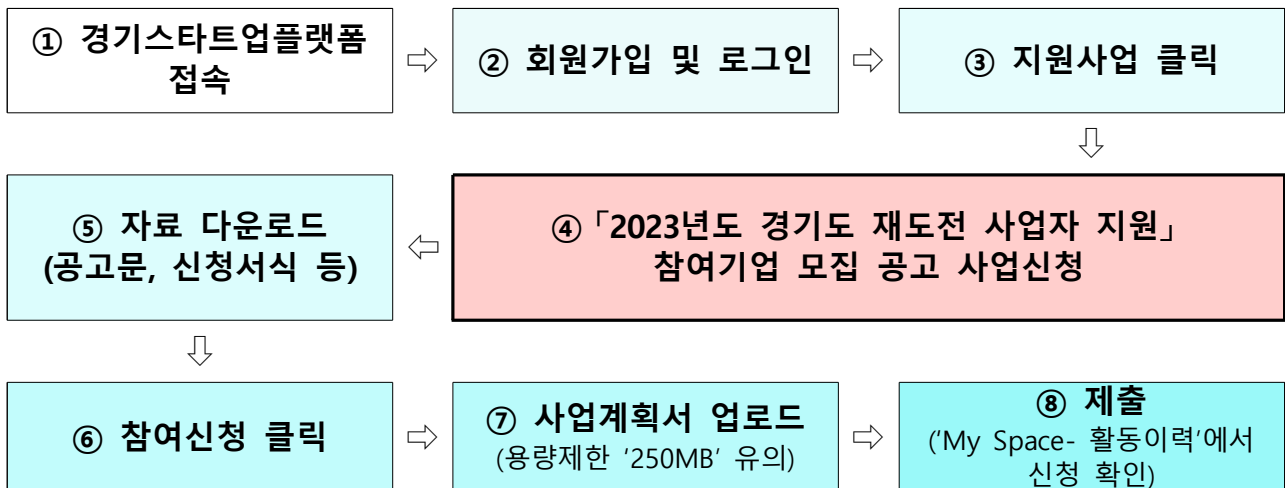
- (공고기간) 2023. 3. 24.(금) ~ 4. 10.(월)
- 접수기간 : 2023. 3. 24.(금) ~ 4. 10.(월), 18:00 까지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함.
- 2)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My space ⇒ 활동이력에서 지원사업 신청여부 확인
- 3)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4)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가 마감되며, '제출완료'후에도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하여 재업로드 가능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www.gsp.or.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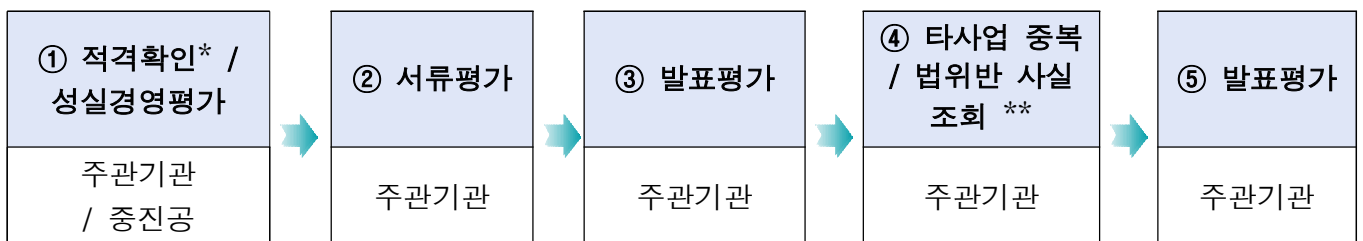


□ 제출서류

구분	목 록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1-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2호)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3호) 3.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 동의서 4. (예비)재창업자 폐업사실확인서(서식1-7호) 5. 폐업사실증명 (홈텍스) *기 폐업한 모든 사업장 발급분 6.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채무변제 관련 서류(해당시)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 변제계획인가 결정문, 채무조정합의서 등
예비재창업자	1.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 *증명내용 : 마지막 폐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초기재창업자	1. 사업자등록증(홈텍스) 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업 해당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4호) 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서식1-5호)

5 |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범위반 사실 확인 시(1회이상)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붙임5. 참조」

*** 세부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① **[적격확인/성실경영평가]** (예비)재창업자 신청자격 등 검토 및 성실경영평가
-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 평가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병행 평가 → 최종선정

< 유형별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서류 · 발표	문제인식 (Problem)	① 폐업(실패) 원인 분석 ②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③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실행가능성 (Solution)	①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② 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③ 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 (Scale-Up)	①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②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③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팀 구성 (Team)	① 재창업자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내부) ② 외부 역량 확보 및 계획의 적정성 (외부)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및 경기도 지원금 확정

*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차등 지원)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

- 선정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본 사업 「사무편람」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자료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과정 중 과거 모든 폐업기업의 실질기업주 여부 확인을 위한 주관기관의 자료제출(폐업사실증명원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 다수 폐업자의 경우 모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누락, 미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 계획대로 협약기간 내 사업비 집행(공급가액의 10%이상 자부담) 및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본 사업 「사무편람」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23년도 경기도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이 되더라도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 및 수행 가능
- * 타 사업 중복 해당자는 본 사업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4, 붙임6 참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본 사업 「사무편람」에 따르며, 사업신청·선정 이후 관련 규정·편람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7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처

□ 신청 · 접수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031-259-6087 / restart@gbsa.or.k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2. 7.]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 2. 7.,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에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에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에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붙임 2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⑦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 ⑨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붙임 3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2백만원 이상 건은 용역업체로 직접 지원 가능
인건비	참여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1인 월 3백만원 한도내 집행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등록관련 비용
광고선전비	참여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단, 홈페이지 제작은 3백만원 한도내 사용 *2백만원 이상 건은 용역업체로 직접 지원 가능
사무실임차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경기도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기자재 임차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세무회계기장비	참여기업이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대행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2백만원 한도내 집행
전시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멘토링비	참여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2백만원 내, 자부담없음)
교육훈련비	참여기업 직원이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0.21. 규정 제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1.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사업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2.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범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범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3.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범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시(범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범위반사실 사업부서별(사업별) 범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범위반사실 확인(변경)

: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범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범위반조회발급/범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이의 및 구제신청

: 범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범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붙임 6

사업 참여기업 제재 및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 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범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범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함